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주 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구윤철 (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을 신청하거나 미납세 반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명확화하고, 과실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5일 이내에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반입증명서”를 “5일 이내에 반입증명서”로 한다.

별표 1 제2호가목6) 첨가할 수 있는 재료란 중 “당분·산분·조미료·향료·색소·아스파탐·스테비올배당체·솔비톨·수크랄로스·아세설팜칼륨·에리스리톨·자일리톨·효소처리스테비아”를 “당분·산분·조미료·향료·색소·아스파탐·스테비올배당체·솔비톨·수크랄로스·아세설팜칼륨·에리스리톨·자일리톨·효소처리스테비아·아라비아검·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·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”으로 하고, 같은 목 7) 첨가할 수 있는 재료란 중 “사카린나트륨·아스코르빈산·식물·아스파탐·스테비올배당체·솔비톨·수크랄로스·아세설팜칼륨·에리스리톨·자일리톨·효소처리스테비아”를 “사카린나트륨·아스코르빈산·식물·아스파탐·스테비올배당체·솔비톨·수크랄로스·아세설팜칼륨·에리스리톨·자일리톨·효소처리스테비아·아라비아검·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·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1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미납세 반출승인 및 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반출승인을 신청하거나 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) 별표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미납세 반출승인신청) ① · ② (생 략)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 장은 반출승인을 한 <u>경우</u>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,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 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해야 한다. ④ (생 략)	제14조(미납세 반출승인신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경우 5일</u> <u>이내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6조(반입신고 및 반입증명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 할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한 자 에게 <u>반입증명서</u> 를 발급해야 한 다. ③ (생 략)	제16조(반입신고 및 반입증명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 <u>5일 이내에 반입증명서</u> --- --.
	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33